

한화그린히어로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DB589]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가위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가위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화그린히어로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전환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임팩트(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중요한 투자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해결책을 중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상 기후위기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지만, E, S, G 항목별 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ESG 성과, ESG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화그린히어로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한화그린히어로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기후위험완화산업(mitigation)과 기후위기적응산업(adaptation)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전환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임팩트(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중요한 투자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해결책을 중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상 기후위기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지만, E, S, G 항목별 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ESG 성과, ESG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1) 주요 투자 전략**■ 기후위험완화산업(mitigation)과 기후위기적응산업(adaptation)에 투자**

산업구분	기후위험완화산업(mitigation)		③기후위기적응산업 (adaptation)
	①기후위험완화기술	②기후위험완화적용	
개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완화 기술을 실제 기업활동에 적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	기후위기에 따라 생존을 위해 새롭게 필요하거나 가치가 부각될 기업

예시 기업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 중립) 선언 기업	RE100 ^{주1)} , Net Zero(탄소 방재, 인프라, 재난관리, 수 자원, 식량자원 등
주1)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		
■ 투자프로세스		
① 유니버스 구성: 자체적인 산업 분석을 통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반영		
기후위험완화산업, 기후위기적응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탄소배출 부문(발전, 운송, 산업, 건물, 축산 등) 확인 후 이에 대응하는 기술과 제조역량을 확보한 기업 •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고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했거나, 이에 준하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위험 완화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 •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기후 재난 위험이 낮은 기업 (향후 추진 예정) 		
그린히어로 Scre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험완화산업 관련 매출과 이익 비중, 특허 보유 여부, 기술 공개 여부, 기업 인수, 신사업 추진,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위험 완화 기술 핵심 기업 선정 •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속도, 목표 달성을, 실제 감축 실적, 탄소 감축 영향력이 큰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위험 완화 적용 핵심 기업 선정 		
100~200개 종목으로 그린히어로유니버스 구성		
<p>②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스 종목 내에서 한화자산운용 종목 선정 원칙에 따라 선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 특히, 기후위험완화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과 새롭게 기후위험완화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 주목 		
<p>- 비교지수: 없음</p> <p>※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수의 구성종목 비중을 단순 추종하거나 해당 비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적절히 비교할 지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 비교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분류	구시금석, 풍천(구국정), 개성정(궁보관폐기정), 구기정, 청류정, 보사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투자비용	수수료산하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072	0.50	1.73	1.1165	213	332	457	726	1,525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C)	없음	1.472	0.90	1.87	1.5167	155	319	490	859	1,955
	수수료산하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822	0.25	1.29	0.8664	138	231	329	538	1,161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없음	1.022	0.45	1.47	1.0662	109	224	345	604	1,37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3년마다 환매금액의 0.15% 이내	0.812	0.24	-	0.8564	88	180	277	485	1,104
	수수료미정구	없음	1.132	0.560	-	1.1763	121	247	380	666	1,517

	오픈 토지펀드(C-RP (토지펀드))									
	수수료포함 온라인 토지펀드(C-RPe (토지펀드))	없음	0.8020	0.230	-	0.8464	87	178	273	479 1,091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2.10.25 ~ 23.10.24	21.10.25 ~ 23.10.24	20.10.25 ~ 23.10.24		20.10.16 ~ 23.10.24
수수료선취 오픈인(A) (%)	2020.10.16	-19.75	-15.51	2.62		1.82	
수익률변동성(%)		24.84	25.58	25.95		25.95	

* 비교지수: 없음 /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KRW)*90% + 매경 BP Call*10%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ESG펀드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기환	1985년	책임(매니저)	5	2,407	-12.16	-4.72	0.25	-0.21	13년 4개월	3년 4개월		
	장연주	1982년	부책임(매니저)	3	2,004	-12.16	-4.72			4년 7개월	2년 7개월		
	권혁만	1986년	부책임(매니저)	9	1,752	-12.16	-4.72			4년 1개월	3년 4개월		

- * 기준일: 2024년 2월 16일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나,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 전략을 쓰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와 투자 대상국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당 외환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 국가 통화 간의 환율 변화에 의하여 투자 시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등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 신뢰성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 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ESG집합투자 기구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상 기후위기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지만, E, S, G 항목별 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ESG 성과, ESG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e0c7;">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e0c7;">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p>· 종류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J-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 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J-RPe(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style="color: red;">※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 red;">※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2020년 10월 15일부터 투자신탁의	모집·매출 10조좌						

	해지일까지	총액	
효력 발생일	2024년 2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 (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직접판매 (J)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	

